

## 제284회 성주군의회(임시회) 제1차 본회의 회의록 (부록)

### 목 차

- 제284회 성주군의회(임시회) 발의의안.....2면
- 제284회 성주군의회(임시회) 검토보고서.....40면

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

2024. 7. 9.(화) 10:30  
성주군의회 본회의장

# 제284회 성주군의회 (임시회) 제1차 본회의 발의 및 제출 의안

〈 의 안 목 록 〉	〈 발의 및 제출자 〉
1.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	【성 주 군 수】
2.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	【성 주 군 수】
3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	【장익봉의원외6인】
4.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	【성 주 군 수】
5. 공유재산(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) 사용수익허가 동의안	【성 주 군 수】
6. 금수문화공원야영장 운영·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	【성 주 군 수】
7.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·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	【성 주 군 수】
8.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·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	【성 주 군 수】
9.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【성 주 군 수】



## 성 주 군 의 회

#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4년 7월 일
제출자 : 성 주 군 수

## 1. 제 출 근 거

-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

## 2. 주 요 내 용

- 예산규모 : 33,390백만원
  - 일반회계 : 32,100백만원
  - 특별회계 : 1,290백만원

※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 별첨

## 3. 첨 부 서 류

- 2024년도 예산편성기준(기 제출)
-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
- 참고자료

#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4년 7월 일
제출자 : 성 주 군 수

## 1. 제출 근거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

## 2. 주요 내용

- 기금예산규모 : 210백만원
  -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: 210백만원
- ※ 세입세출 내역 별첨

## 3. 첨부 서류

-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#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(장익봉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일자 : 2024. 7. .  
발의자 : 장익봉 · 이화숙 · 구교강  
김경호 · 김성우 · 김종식  
여노연 의원

## 1. 주 문

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「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, 활동기간은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함.

## 2. 제안이유

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 : 지방자치법 제64조,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

**참 고****관련 근거****▣ 지방자치법**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**▣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**

제2조(위원회의 설치)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,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.

#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4년 7월 일
제출자 : 성 주 군 수

## 1. 제안 근거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
- 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
- 다. 「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## 2. 주요 사업

### 가. 수륵면 백운리 일반재산 처분

#### 1) 목적

- 장기간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반재산으로 (주가야호텔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해주고 있던 일반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지방재정수입증대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2) 용도 : 수륵면 백운리 1282-26 외 2필 일반재산 처분

#### 3) 기간 : 2024. 07. ~ 2024. 10.

#### 4) 규모

- 수륵면 백운리 1282-26 대지 303㎡
- 수륵면 백운리 1282-27 대지 2,326㎡
- 수륵면 백운리 1282-29 대지 2,125㎡
- 총 4,754㎡

## 5) 기준가격명세

(단위 : m<sup>2</sup> , 백만원)

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기준가격	재산관리관	비고
소계				4,754	603		
토지	수륜면 백운리	1282-26	대지	303	38	재무과	
토지	수륜면 백운리	1282-27	대지	2,326	295	재무과	
토지	수륜면 백운리	1282-29	대지	2,125	270	재무과	

## 6) 매각방법

- 지명경쟁입찰





## 2024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(제3차 수시분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매각 대상 수량	과표 또는 평가액	매각 시기	매각 사유	매 수 희망자 성 명	비고
	지목	소 재 지	일단의 수 량						
1	대	백운리 1282-26	303	303	38,481	3분기	불필요한 일반재산 처분		
2	대	백운리 1282-27	2,326	2,326	295,402	3분기	불필요한 일반재산 처분		
3	대	백운리 1282-29	2,125	2,125	269,875	3분기	불필요한 일반재산 처분		

- 주) (1)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: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.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○○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.
- (2) 일단의 수량 : 일단의 부지(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)의 전체 수량을 표시한다.
- (3) 매각대상수량 :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.
- (4) 과표 또는 평가액 : (3)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.
- (5) 매각시기 :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.
- (6) 매각사유 :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

## 2024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(제3차 수시분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일련번호	재산표시				교환대상 수량	추 정 가 액	교 환 시 기	교 환 사 유	교 환 대상자	비고
	구분	지목	소재지	일단의 수량						
		해	당	없	음					
계	부지									
	건물	처분								
		취득								
	기타	처분								
		취득								

- 주) (1) 구분 :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.  
 (2) 교환대상수량 : 예를 들어 일단의 부지가 5,000m<sup>2</sup>이고, 교환대상부지가 2,000m<sup>2</sup>이면 “일단의 수량”란에는 5,000, “교환대상수량”란에는 2,000을 기재한다.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.

## 2024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(제3차 수시분)

회계명 : 일반회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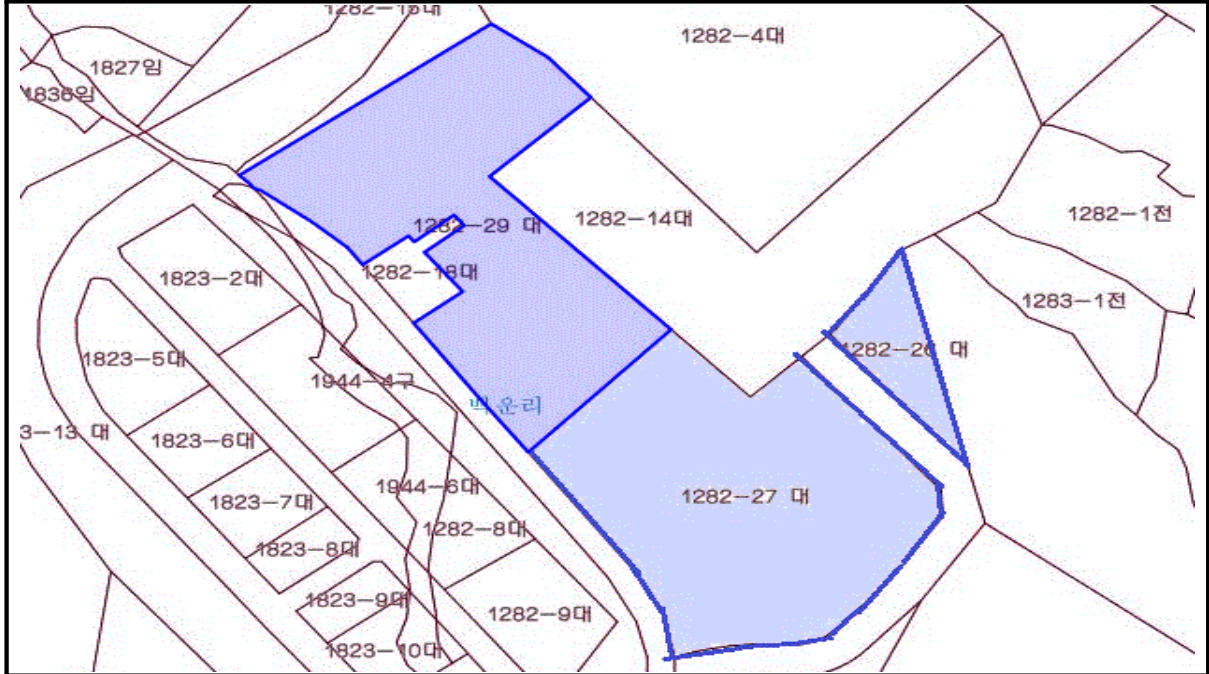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일련번호	재 산 표 시			양여 대상 수량	과 표 또는 평가액	양여 시기	양여 사유 및 근거 법령	양수자	비고
	지목	소재지	일단의 수 량						
			해	당	없	음			
계	부지 건물 기타								

주) (1) 양여대상수량 : “양식 7-3”의 주) (2)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.

(2) 양여사유 :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.

# 수륵면 백운리 일반재산 처분 참고자료



〈처분대상 일반재산 위치도〉



〈위성사진 위치도〉

# 공유재산(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) 사용수익허가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4년 7월 일
제출자 : 성주군수

## 1. 제안이유

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조성된 식음시설(카페테리아)의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유희공간 활용 · 군세입 증대로 관광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대 상 : 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 내 카페테리아
- 나. 위 치 :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식물원길 21
- 다. 시설규모 : 건물연면적 2,865.91㎡ 중 지상1층 카페테리아 185.06㎡
- 라. 계약방법 : 공개경쟁모집
- 마. 사용기간 : 계약일로부터 3년간
- 바. 사용료 산정기준 : (건물평가액+부지평가액)\*0.05

### ※ 계약 내역

구 분	계약기간	사용료	비 고
1회	2017.9.1.~2022.8.31.	12,214,000원/년	2회 유찰 후 수의계약
2회	2023.2.20.~2024.2.29.	12,550,000원/년	4회 유찰 및 5회차 낙찰 현 낙찰자 1년간 운영 후 건강상 운영포기

## 3. 관련법령

- 가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, 제21조(사용허가, 기간)
- 나.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(사용수익허가)
- 다.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(의결사항)

## 관 련 법 령

### 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, 제21조(사용허가, 기간)

**제20조(사용허가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2.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는 경우

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**제21조(사용허가기간)**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, 그 기간은 20년(이하 이 조에서 “총 사용가능기간”이라 한다)을 넘을 수 없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 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.

▣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(사용수익허가)

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- 1. 사용목적
- 2. 사용기간
- 3. 사용료
- 4. 사용료 납부방법
- 5. 사용·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
- 6. 사용·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
- 7. 허가조건

▣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(의결사항)

제2조(의결사항)

①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성주군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, 합의각서(MOA), 양해각서(MOU)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. 다만 법령에 규정을 두거나 상호 노력의 무만 포함하는 경우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성주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.

②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약, 합의각서(MOA), 양해각서(MOU) 체결 등 교류 협력 사업의 경우로 한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
- 2.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
- 3. 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. 다만,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.

가.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백만원 이상인 공유재산

나. 일단(一團)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재산

# 금수문화공원야영장 운영·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4년 7월 일
제출자 : 성 주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가. 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야영장 운영·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사무명 : 금수문화공원야영장 운영·관리

나. 민간위탁시설 개요

- 시설명 : 금수문화공원야영장(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47번지 일원)
- 면적 : 50,592㎡ [농어촌공사 부지 임차사용(10필지, 44,233㎡)]
- 규모
  - 캠핑사이트 103면(오토캠핑장 47면, 일반캠핑장 56면)
  - 주차장 200면

다. 민간위탁기간 : 2년(2024. 6. 1. ~ 2026. 5. 31.)

라. 수탁자 선정방식 :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('24.4.24.)

- 현 수탁자 : 낙바우마을협동조합(대표 : 최창호)
  - ※ 최초(1차) : 2016. 5. 25. ~ 2018. 5. 24.(2년)
  - 재위탁(2차) : 2018. 6. 1. ~ 2020. 5. 31.(2년)
  - 재위탁(3차) : 2020. 6. 1. ~ 2022. 5. 31.(2년)
  - 재위탁(4차) : 2022. 6. 1. ~ 2024. 5. 31.(2년)

- 심의결과 : 조건부 의결
  - 부실운영 예방을 위한 야영장 운영계획서 보완 제출
  - 야영장 환경정비 철저

마. 위탁료 : 연 5,216,000원(관광시설 원가계산 용역 결과)

바. 위탁사무

- 야영장 운영(예약 등) 및 시설 보수·유지관리
- 이용객 관리 및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
- 캠핑장 운영 관련 발생하는 민원사항 해소 등

사. 예산지원 : 금11,000천원/년(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포함, '24년도 기준)

**3. 참고자료**

가.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나.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(관리·운영)

다.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## 【관 련 법 령】

### 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-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
### ■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**제3조(관리·운영)** 야영장은 군수가 관리·운영한다. 다만,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, 개인에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

### ■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-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**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 2.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 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-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성주군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#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·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4년 7월 일
제출자 : 성주군수

## 1. 제안이유

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운영능력을 갖춘 적격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 대상시설 현황

시설명	소재지	면적(m <sup>2</sup> )	정원(명)	종사자(명)	비고
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2호점	성주읍 성주읍1길 13 (별의별어울림복합센터내 2층)	136	20	3	

### 나. 다함께돌봄센터 위치도

시설명	센터 위치도	현장사진
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		

다. 연간운영비 : 144,466천 원(국42,636 도31,748 군70,082)

### 라. 위탁내용

- 1) 위탁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
- 2) 위탁방법 : 공개경쟁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

### 3) 위탁사무

-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아동의 안전한 보호,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·간식 제공
-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-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- 돌봄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연계

## 3. 수탁자 선정

가.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나. 신청자격 :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

다. 선정방법 : 선정위원회(6~9명)를 구성하여 정량·정성평가

라. 선정기준 : 수탁자의 적격성,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, 재정능력,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등 심사표에 의거 배점으로 평가

## 4. 향후 추진계획

가.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계획 수립 : 2024. 7.

나. 위탁운영 모집 공고 : 2024. 7.

다.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: 2024. 8.

라.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: 2024. 9.

## 5. 참고자료

가.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 2(다함께 돌봄센터)

나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

다. 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, 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, 제6조(수탁기관 선정)

## 【관 련 법 령】

### □ 아동복지법

**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**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“방과 후 돌봄서비스”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□ 사회복지사업법

**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·적·중·합·적·으·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성주군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 선정)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사무의 특성상 공개 모집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공개 모집할 수 있다.

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#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·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가.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에 관한 임금·운영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 지침을 준용함.
- 나.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·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,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성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성주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름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□ 예산액 : **144,466천원(국42,636 도31,748 군70,082)**

가. 인건비 : 126,466천원

- 센터장 : 3,166,000원 × 1명 × 12개월 = 37,992천원
- 시간제 돌봄교사 : 2,940,000원 × 1명 × 12개월 = 35,280천원
- 센터장 추가 인건비 : 865,500원 × 1명 × 12개월 = 10,386천원
- 돌봄 코디네이터 : 3,099,000원 × 1명 × 12개월 = 37,188천원
- 명절 수당 및 가족 수당 : 5,620천원

나. 운영비 : 18,000천원

-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: 12,000천원
- 사업비(프로그램비) : 6,000천원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합계
세입	○						
	○						
	소계(a)						
세출	○ 인건비	126,466	132,790	139,430	146,402	153,722	698,810
	○ 운영비	18,000	18,900	19,845	20,837	21,879	99,461
	소계(b)	144,466	151,690	159,275	167,239	175,601	798,271
□ 총 비용		144,466	151,690	159,275	167,239	175,601	798,271

### 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합계
국비		42,636	44,768	47,006	49,357	51,825	235,592
도비	일반회계	31,748	33,335	35,003	36,753	38,591	175,430
	○○특별회계						
	○○기금						
시·군비		70,082	73,587	77,266	81,129	85,185	387,249
민간							
기타							
합계		144,466	151,690	159,275	167,239	175,601	798,271

5. 부대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가족지원과 가족돌봄팀장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분	항목	금액	산출기초	비고
계		144,466		
인건비	기본급	120,846	센터장 3,166,000원 * 1명 * 12개월 = 37,992 돌봄교사 2,940,000원 * 1명 * 12개월 = 35,280 돌봄코디네이터 3,099,000원 * 1명 * 12개월 = 37,188 센터장 추가인건비 865,500원 * 1명 * 12개월 = 10,386 →경북 호봉 기준표와 보건복지부 지원 인건비차액 도비추가지원	
	제수당	5,620	명절수당 및 가족수당 2,710,000원 × 2명 = 5,420 종사자복지포인트 - 센터장 100,000원 × 1명 = 100 - 돌봄코디 100,000원 × 1명 = 100	
	소 계	126,466		
운영비	운영비	12,000	사무관리비 및 운영비 1,000,000원 × 12개월 = 12,000	
	프로그램	6,000	사업비(프로그램비) 500,000원 × 12개월 = 6,000	
	소 계	18,000		

#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·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4년 7월 일
제출자 : 성 주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가. 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사무명 :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·관리

나. 민간위탁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(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522)
- 면적 : 1,551㎡ [임차사용(2필지, 소유주 : 박홍은)]

다. 민간위탁기간 : 1년(2024. 1. 1. ~ 2024. 12. 31.)

라. 수탁자 선정방식

- 선정방법 : 수탁자 공개모집
- 선정기준 : 반려동물 전담 구조·보호인력을 보유한 성주군 소재의 기관이나 단체 중 보호센터 운영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자
  -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
 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·운영하는 동물보호소
  -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
  -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
- 선정결과 : (주)독케어(대표 : 박명석)

마. 위탁사무

-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
- 성주군 내에서 발생하는 유실·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구조·보호
- 기타 동물보호 관련 업무 및 학교, 주민 연계 봉사프로그램 운영 등

바. 예산지원 : 금310,804천원(도 29,299천원, 군 281,505천원)

# 관 련 법 령

## ■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성주군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.

##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·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비용추계서

#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# 1. 재정수반요인

가. 동물보호법 제36조(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)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 센터에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,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름

나.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종사자에 관한 임금규정은 ‘2024년 최저 임금제도’ 등을 준용함

#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예산액 : 금310,804천원

사업별 예산액

구분	도비	군비	군비추가	합계	비고
합계	29,299	68,365	213,140	310,804	
보호센터	8,700	20,300	130,420	159,420	
포획단	7,099	16,565	28,920	52,584	
입양센터	13,500	31,500	53,800	98,800	

#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세입	○ 세외수입	-	-	-	-	-
소계(a)		-	-	-	-	-	-
세출	○ 도비	29,299	-	-	-	-	29,299
	○ 군비	281,505	-	-	-	-	281,505
	소계(b)	310,804	-	-	-	-	310,804
<input type="checkbox"/> 총 비용(a-b)		310,804	-	-	-	-	310,804

4. 재원조달 방안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	-	-	-	-	-	-
도비	일반회계	29,299	-	-	-	-	29,299
	특별회계	-	-	-	-	-	-
	기금	-	-	-	-	-	-
시·군비		281,505	-	-	-	-	281,505
민간		-	-	-	-	-	-
기타		-	-	-	-	-	-
합계		310,804	-	-	-	-	310,804

5. 부대의견 : 동물보호법 강화 및 유실·유기동물의 증가로 인해 매년 보호센터 운영 소요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6. 작성자 : 산림축산과 축산방역팀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 □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

(단위 : 천원)

구분	항목	산출내역	금 액	비고
합계			159,420	
인건비	인건비	· 근로자 2,900천원/월 × 2명 × 12월	69,600	
사료구입	사료구입	· 45천원(20kg) × 100포/월 × 12월	54,000	
사무실 운영	통신요금	· 스마트폰 70천원/월 × 1대 × 12월	840	
	통신요금	· 인터넷 45천원/월 × 1식 × 12월	540	
	렌탈비용	· 복사기 등 렌탈 300천원/월 × 12월	3,600	
	사무실운영	· 간식비 등 구입 200천원/월 × 12월	2,400	
보호센터 운영	임대료	· 보호센터 임대 1,300천원/월 × 12월	15,600	
	툰밥구입	· 툰밥 구입 300천원/월 × 12월	3,600	
	전기	· 전기 400천원/월 × 12월	4,800	
	수도&기타	· 수도&기타 연료 200천원/월 × 12월	2,400	
	물품구입	· 유기동물 관리 물품 등 구입	2,040	

### □ 성주군 유기동물 포획단 운영

(단위 : 천원)

구분	항목	산출내역	금 액	비고
합계			52,584	
인건비	인건비	· 근로자 2,900천원/월 × 1명 × 12월	34,800	
	인건비	· 일일근로자 고용	1,784	
차량 유지	유류대 및 렌트비	· 유류대 800천원/월 × 12월 · 렌트비 200천원/월 × 12월	12,000	
	차량보험	· 차량보험 1,000천원/1년 × 1대	1,000	
	유지보수	· 차량 유지보수	1,000	
일반운영	소모품구입	· 포획용 소모품 등 구입	2,000	

□ 성주군 반려동물 입양센터

(단위 : 천원)

구분	항목	산출내역	금 액	비고
합계			98,800	
인건비	인건비	· 근로자 2,800천원/월 × 1명 × 12월	33,600	
	인건비	· 근로자 2,300천원/월 × 1명 × 12월	27,600	
사료 구입	사료구입	· 45천원(20kg) × 20포/월 × 12월	10,800	
	사료구입	· 고양이 등 특수사료 구입	1,200	
사무실 운영	통신요금	· 스마트폰 70천원/월 × 1대 × 12월	840	
	사무실운영	· 식비 및 간식비 등	2,000	
입양센터 운영	임대료	· 초전 임대료 1,000천원/월 × 12월	12,000	
	운영비	· 유기동물 소모품 등 구입	1,000	
	전기요금	· 전기요금 400천원/월 × 12월	4,800	
	수도&기타	· 수도&기타요금 100천원/월 × 12월	1,200	
	물품구입	· 유기동물 관리 물품 등 구입	3,760	

#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4년 7월 일
제출자 : 성 주 군 수

## 1. 개정이유

영유아(7세이하)를 둔 가정이 특별교통수단(교통약자 콜택시)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아이 낳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(제4조제1항)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
 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추가

구 분	현 행	개 정
이용대상 (제4조제1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중증보행장애인</li> <li>◦ 65세이상 장기요양환자(1~3급)</li> <li>◦ 임산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중증보행장애인</li> <li>◦ 65세이상 장기요양환자(1~3급)</li> <li>◦ 임산부</li> <li>◦ 영유아</li> </ul>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
- 나. 예산조치 : 붙임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다. 기 타 : 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[기획예산실-5266(2024.5.3.)]  
 2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[가족지원과-23059(2024.5.8.)]  
 3) 입법예고 : 2024. 5. 28. ~ 2024. 6. 18.(21일간)

## 성주군 조례 제 호

##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단서 중 “이용상황에 따라 운행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”를 “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7호 (중전의 제6호) 중 “제5호까지”를 “제6호까지”로 한다.

4.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
5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야간, 공휴일 등에는 <u>이용상황에 따라 운행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>제4조(이용대상 및 이용제한)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제1호부터 <u>제5호까지</u>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한다.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이용대상 및 이용제한) ①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<u>따른 임산부</u></p> <p>5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호에 <u>따른 영유아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7. ----- <u>제6호까지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◆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

제6조(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)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(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)는 해당 시·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.  
 <개정 2012. 11. 30., 2019. 7. 5., 2023. 7. 20.>

1.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는 버스·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2. 삭제 <2023. 7. 20.>
3. 버스·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·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
4.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##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# 가. 재정수반요인

해당 없음

### 나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

### 다. 미첨부 사유

이용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 발생 비용 없음

### 라. 작성자

새마을교통과 교통행정팀장

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

2024. 7. 9.(화) 10:30  
성주군의회 본회의장

# 제284회 성주군의회 (임시회) 제1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

〈 의 안 목 록 〉	〈 제 출 자 〉
○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	【 성 주 군 수 】
○ 공유재산(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) 사용수익허가 동의안	【 성 주 군 수 】
○ 금수문화공원야영장 운영·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	【 성 주 군 수 】
○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·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	【 성 주 군 수 】
○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·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	【 성 주 군 수 】
○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【 성 주 군 수 】



## 성 주 군 의 회

#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## 1. 제안근거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
- 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
- 다. 「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수륵면 백운리 일반재산 처분

#### 1) 목적

- 장기간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반재산으로 (주)가야호텔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해주고 있던 일반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지방재정수입증대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2) 용도 : 수륵면 백운리 1282-26 외 2필 일반재산 처분

#### 3) 기간 : 2024. 07. ~ 2024. 10.

#### 4) 규모

- 수륵면 백운리 1282-26 대지 303m<sup>2</sup>
  - 수륵면 백운리 1282-27 대지 2,326m<sup>2</sup>
  - 수륵면 백운리 1282-29 대지 2,125m<sup>2</sup>
- 총 4,754m<sup>2</sup>

## 5) 기준가격명세

(단위 : m<sup>2</sup> , 백만원)

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기준가격	재산관리관	비고
소계				4,754	603		
토지	수륵면 백운리	1282-26	대지	303	38	재무과	
토지	수륵면 백운리	1282-27	대지	2,326	295	재무과	
토지	수륵면 백운리	1282-29	대지	2,125	270	재무과	

## 6) 매각방법

- 지명경쟁입찰

## 3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장기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, (주)가야호텔에 대부분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고 있던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, 매각대상은 수륵면 백운리 1282-26번지의 대지 303m<sup>2</sup>와 백운리 1282-27번지의 대지 2,326m<sup>2</sup>, 백운리 1282-29번지의 대지 2,125m<sup>2</sup>로 총 3필지에 면적은 4,754m<sup>2</sup>이며, 기준가격은 6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.
- 검토결과, 지방재정 수입 증대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# 공유재산(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) 사용수익허가 동의안

## 1. 제안이유

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조성된 식음시설(카페테리아)의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유희공간 활용·군 세입 증대로 관광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대 상 : 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 내 카페테리아

나. 위 치 :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식물원길 21

다. 시설규모 : 건물연면적 2,865.91㎡ 중 지상1층 카페테리아 185.06㎡

라. 계약방법 : 공개경쟁모집

마. 사용기간 : 계약일로부터 3년간

바. 사용료 산정기준 : (건물평가액+부지평가액)\*0.05

### ※ 계약 내역

구 분	계약기간	사용료	비 고
1회	2017.9.1.~2022.8.31.	12,214,000원/년	2회 유찰 후 수의계약
2회	2023.2.20.~2024.2.29.	12,550,000원/년	4회 유찰 및 5회차 낙찰 현 낙찰자 1년간 운영 후 건강상 운영포기

### 3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공유 재산 사용·수익허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, 대상은 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 내 식음시설인 카페테리아로 그 면적은 185.06㎡이며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.
  
- 검토 결과, 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 함으로써 군 세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불어 이용객들에게 휴게시설을 제공하여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「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# 금수문화공원야영장 운영·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## 1. 제안이유

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야영장 운영·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사무명 : 금수문화공원야영장 운영·관리

나. 민간위탁시설 개요

- 시설명 : 금수문화공원야영장(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47번지 일원)
- 면적 : 50,592㎡ [농어촌공사 부지 임차사용(10필지, 44,233㎡)]
- 규모
  - 캠핑사이트 103면(오토캠핑장 47면, 일반캠핑장 56면)
  - 주차장 200면

다. 민간위탁기간 : 2년(2024. 6. 1. ~ 2026. 5. 31.)

라. 수탁자 선정방식 :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(‘24.4.24.)

- 현 수탁자 : 낙바우마을협동조합(대표 : 최창호)
  - ※ 최초(1차) : 2016. 5. 25. ~ 2018. 5. 24.(2년)
  - 재위탁(2차) : 2018. 6. 1. ~ 2020. 5. 31.(2년)
  - 재위탁(3차) : 2020. 6. 1. ~ 2022. 5. 31.(2년)
  - 재위탁(4차) : 2022. 6. 1. ~ 2024. 5. 31.(2년)

- 심의결과 : 조건부 의결
  - 부실운영 예방을 위한 야영장 운영계획서 보완 제출
  - 야영장 환경정비 철저

마. 위탁료 : 연 5,216천원(관광시설 원가계산 용역 결과)

#### 바. 위탁사무

- 야영장 운영(예약 등) 및 시설 보수·유지관리
- 이용객 관리 및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
- 캠핑장 운영 관련 발생하는 민원사항 해소 등

사. 예산지원 : 금11,000천원/년(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포함, '24년도 기준)

### 3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, 금수면 무학리 47번지 일원 50,592㎡의 부지에 조성된 금수문화공원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넉바우마을 협동조합에 2년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.
- 검토결과, 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야영장 환경 정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·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## 1. 제안이유

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운영능력을 갖춘 적격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 대상시설 현황

시설명	소재지	면적(m <sup>2</sup> )	정원(명)	종사자(명)	비고
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2호점	성주읍 성주읍1길 13 (별이별어울림복합센터내 2층)	136	20	3	

### 나. 다함께돌봄센터 위치도

시설명	센터 위치도	현장사진
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		

다. 연간운영비 : 144,466천 원(국42,636 도31,748 군70,082)

## 라. 위탁내용

- 1) 위탁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
- 2) 위탁방법 : 공개경쟁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
- 3) 위탁사무
  -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  - 아동의 안전한 보호,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·간식 제공
  -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  -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  - 돌봄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연계

## 3. 수탁자 선정

- 가. 선정방법 : 공개모집
- 나. 신청자격 :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
- 다. 선정방법 : 선정위원회(6~9명)를 구성하여 정량·정성평가
- 라. 선정기준 : 수탁자의 적격성,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, 재정능력,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등 심사표에 의거 배점으로 평가

## 4. 향후 추진계획

- 가.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계획 수립 : 2024. 7.
- 나. 위탁운영 모집 공고 : 2024. 7.
- 다.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: 2024. 8.
- 라.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: 2024. 9.

## 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, 별의별어울림 복합센터 내 2층에 136㎡ 규모의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설치하여 신청 자격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 5년간 민간위탁 운영하는 내용입니다.
  
- 검토결과,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아동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아이의 복지증진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.

#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·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## 1. 제안이유

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사무명 :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·관리

나. 민간위탁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(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522)
- 면적 : 1,551㎡ [임차사용(2필지, 소유주 : 박홍은)]

다. 민간위탁기간 : 1년(2024. 1. 1. ~ 2024. 12. 31.)

라. 수탁자 선정방식

- 선정방법 : 수탁자 공개모집
- 선정기준 : 반려동물 전담 구조·보호인력을 보유한 성주군 소재의 기관이나 단체 중 보호센터 운영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자
  -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
 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·운영하는 동물보호소
  -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
  -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
- 선정결과 : (주)독케어(대표 : 박명석)

마. 위탁사무

-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
- 성주군 내에서 발생하는 유실·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구조·보호
- 기타 동물보호 관련 업무 및 학교, 주민 연계 봉사프로그램 운영 등

바. 예산지원 : 금310,804천원(도 29,299천원, 군 281,505천원)

### 3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, 유실·유기 및 피학대 동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·보호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(주)독케어에 1년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.
  
- 유실·유기 및 피학대 동물 구조·보호, 기타 동물보호 관련 사무는 동물의 포획 및 구호 조치 등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민간의 전문 지식과 기술 활용이 중요하므로 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#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개정이유

영유아(7세이하)를 둔 가정이 특별교통수단(교통약자 콜택시)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아이 낳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(제4조제1항)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
 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추가

구 분	현 행	개 정
이용대상 (제4조제1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중증보행장애인</li> <li>◦ 65세이상 장기요양환자(1~3급)</li> <li>◦ 임산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중증보행장애인</li> <li>◦ 65세이상 장기요양환자(1~3급)</li> <li>◦ 임산부</li> <li>◦ 영유아</li> </ul>

## 3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추가하고, 임산부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이용대상 범위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,
- 검토결과,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여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- 다만, 이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제한 규정을 포함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.